금연

No Smoking Area



- **유치원·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**
  보도 및 차도,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,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, 화장실, 복도, 계단, 인접건물의 통로 등 포함 (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)
- **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**

보건복지부
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